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8. 29. 김대식의원 등 18인

나. 회부일자 : 2025. 8. 3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4.11.19.)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4.12.23.) : 상정 ·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2.6.) : 상정 ·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11.26.) :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5.11.27) :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3.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대식의원)

최근 정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 지원 관련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구조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고 있음.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지역의 산업계 등 지역의 정책참여자 간 소통과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대학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삭제 및 제21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천우정)

교육부는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 시행하려고 하고 있음. RISE는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임.

개정안은 이러한 체계 변화에 따라 기존 지방대육성법 상에 규정된 협의회,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RISE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교육부는 현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다른 RISE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 중이며, 그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를 구축 중인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고민정)

김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대안반영 폐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